용인 흥덕 힐스테이트 입주자 모집공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용인시청 주택과 – 4690호(2008. 3. 2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본 아파트는 건전한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 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모바일청약신청 서비스 안내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 신청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모바일(국민은행에 한함)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한 주택과 본 아파트에 당첨된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간 1순위 청약이 제한됨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마이너스 옵션제 적용 주택임

■ 공급 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흥덕택지개발지구2-2블럭

■ 공급 규모 및 내역 : 지하1층, 지상 20층아파트 및 부대시설 총5개 세대[특별공급63가구4특별공급17세대, 기타특별공급57세대(74세대 포함)]

■ 대지면적 : 34,756.60 ㎡아파트: 34,432.31㎡, 근린생활시설 324.29㎡)

■ 공급 면적 및 공급 금액

(단위 : ㎡/천원)

구분	아파트 코드 일반 용인시	아파트 코드 일반 수도권	주택관리번호(모델번호)	주택형(㎡)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별 공급면적 전용	주거공용	소계	세대별 기타공용면적(지하주차장 등)	계약면적	대지지분	공급세대수 계	특별 3자녀	기타	일반	층수(최고층)	주택형(㎡)	층별	공급세대	분양가격 대지비	건축비	합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1회 08.8.20	2회 08.12.20	3회 09.4.20	4회 09.8.20	5회 09.12.20	6회 10.3.20	잔금 입주시
민영주택	21862-01	21863-01	2008000347(01)	114.661	84.981	29.680	114.661	3.232(35.741)	153.634	60.4083	207	6	21	180	20	114.661	1층	5	165,856	323,400	64,680	32,340	32,340	32,340	32,340	32,340	32,340	64,680
																	2층	9	173,256	330,800	66,160	33,080	33,080	33,080	33,080	33,080	33,080	66,160
																	기준층	193	180,556	338,100	67,620	33,810	33,810	33,810	33,810	33,810	33,810	67,620
	21862-02	21863-02	2008000347(02)	114.105	84.975	29.130	114.105	3.231(35.738)	153.074	60.4041	38	1	4	33	19	114.105	1층	2	165,267	322,800	64,560	32,280	32,280	32,280	32,280	32,280	32,280	64,560
																	2층	2	172,567	330,100	66,020	33,010	33,010	33,010	33,010	33,010	33,010	66,020
																	기준층	34	179,867	337,400	67,480	33,740	33,740	33,740	33,740	33,740	33,740	67,480
	21862-03	21863-03	2008000347(03)	115.755	84.982	30.773	115.755	3.232(35.741)	154.728	60.4090	224	7	22	195	20	115.755	1층	8	167,054	324,600	64,920	32,460	32,460	32,460	32,460	32,460	32,460	64,920
																	2층	12	174,554	332,100	66,420	33,210	33,210	33,210	33,210	33,210	33,210	66,420
																	기준층	204	181,954	339,500	67,900	33,950	33,950	33,950	33,950	33,950	33,950	67,900
	21862-04	21863-04	2008000347(04)	116.454	84.975	31.479	116.454	3.231(35.738)	155.423	60.4041	101	3	10	88	20	116.454	1층	5	167,867	325,400	65,080	32,540	32,540	32,540	32,540	32,540	32,540	65,080
																	2층	5	175,367	332,900	66,580	33,290	33,290	33,290	33,290	33,290	33,290	66,580
																	기준층	91	182,867	340,400	68,080	34,040	34,040	34,040	34,040	34,040	34,040	68,080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3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총금액을 기준으로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당사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하였으며 각 주택형별 공히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이며, 기타공용은 관리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의 면적임.
- 특별공급은 청기면 · 국가보훈대상자 · 장애인 등에 건설량의 10%범위내에서 공급 되고, 무주택 3자녀 특별공급은 건설량의 3%범위내에서 공급 되며 당사에서 적접 모델하우스 접수 를 통해 분양 대상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의 신청자들은 신청형별로 일반공급으로 전환될 미달 신청물량은 용인시수도권 30기이의 비율로 배분하되 용인시의 30% 물량을 먼저 개산하고 소수 점 이하는 반올림함. • 116.454㎡ / 114.105㎡ 는 전용면적 및 내부 평면구조는 동일함 단, 116.454㎡의 경우 3호조 합주동에 엘리베이터 2개소 설치(114.105㎡은 2호 세대당 1개소 설치)로 공용면적이 상대적으로 큼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 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함. (단,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반환) .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발코니 사시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계약자 별도 개약 품목임
- 층수는 건물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임.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층간을 1층으로 적용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를 산정함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 될 수 있음 .
- 잔금은 사용 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납부 하여야 하며, 입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 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 하는 금액을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입주잔금은 사용 검사일 기준 으로 납부하여야 할.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 권이전등기시 지적정보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 시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분양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조세(종합토지세 등)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 자 잔금납부시 정산할 예정임(단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기준) • 주택가격(분양대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중도금, 입주 잔금 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이 내용은은행지정 계좌로 납부시에도 동일함.
- 사업주체가 정해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지에게 주택건설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특별 공급

1) 무주택 3자녀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 3. 27) 현재 무주택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재산세납부증명서, 기타 무주택자임을증명하는 서류 등.
-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 및 별도 등재시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1통, 인감증명서(주택담보대출 조합용)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 인정서 및 추천서한 인정(장애인 증명서, 복지카드 등 기타 서류 불가).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및 인정서 1통.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 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 로 인하여 질문 접수 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책임임.

3) 특별공급 유의사항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 로 인한 질문 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공급계약이 해제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람.

■ 공 통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 3. 27)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 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만 단한 기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시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기당첨된 자 또는 기청약된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제한 기간이 경과되어야만 1, 2, 3순위 자격으로 청약이기능함.

■ 순위별 청약자격 및 접수일

1) 순위별 신청자격

구분	거주 구분	순위	면적 구분(전용 면적)	신청자격
민영주택	용인시 · 수도권	특별공급	전주 택형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특별공급으로서, 무주택세대주에게 건설량의 10% 범위안에서 특별공급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무주택세대주로서 만20세이만 직계존비속 이상을 둔 자로청약통장 지정일 지난 날로부터 계산하여 2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배점표"에 의한 접수순에 따라 선정함.
		1순위	가점제 추첨제 신청자격	• 가점제 :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세대원전 체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인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분 . • 추첨제 :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인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분. ※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1순위 청약이 불가하며, 청약 신청시 자동으로 추첨제 1순위 대상자로 접수됨 .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나, 2주택 이상시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에 대하여 감점은 적용됨. • 청약자는 가점제 / 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전주 택형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 이상이 경과된 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부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불입한 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이상 청약가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 • 1980. 8. 29 이전 국민은행구, 주택은행의 새평지축에 가입하였거나 1981. 5. 22 이전 국민주택청약부금 가입자중 청약자격 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1순위 청약자격 대상자		• 1순위자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이 불가함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 등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중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당첨사실 포함), 된 세대에 속한 분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 등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한 분 .

※ 청약가점제 지적사항은 1, 2순위에만 해당 되며, 가점제 신청자 중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허위 또는 착오로 과거 5년 이내에당첨사실이 있는 자가 1순위로 신청하여 당첨사실이는 계약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주택공급규칙 한국주택 제15조의 4항 관련)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기타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 · 군지역
85㎡ 이하	300만원, 600만원	250만원, 4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과거 당첨사실 조회방법 : 금융 결제원 아파트 청약센터 (www.apt2you.com) → 청약센터 → 당첨자조회에서 과거 당첨사실 조회 선택 → 과거 5년간 당첨사실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당첨사실 조회 → 조회기준일 입력 → 공인인증서 인증 → 조회

3) 청약 접수 기간 및 장소

구분	순위	거주지	접수 일자	신청장소 및 시간	당첨자발표
민영주택	특별공급	용인시/수도권	2008. 3. 31 (월)	• 장소 : 견본주택 • 시간 : 10:00 ~ 14:00	• 일시 : 2008. 4. 1(화)(10:00) • 장소: 당사견본주택
	1순위	용인시/수도권	2008. 4. 2 (수)	• 장소 : 청약관련예금 가입은행 인터넷(모바일 포함) 청약 • 청약관련 예금 가입은행 인터넷(ARS, 모바일 포함) 청약 – 인터넷 : 국민은행(www.kbstar.com)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 시간 : (08:30) ~ 18:00 ※ 단 3순위 신청자중 국민은행 가입자가 아닌 경우 국민은행 본 · 지점에서 접수	• 일시 : 2008. 4. 11 (금) • 장소 : 당사홈페이지및 문화일보게재 예정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바며, 개별서면통지는 하지않음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바랍니다)
	2순위	용인시/수도권	2008. 4. 3 (목)		
	3순위	용인시/수도권	2008. 4. 4 (금)		

※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노약자 · 장애우 창구청약 가능 시간 : 09:30 ~ 16:30]

• 청약신청은 신청형별에 따라 신청접수 후 당첨자를 선정함.

• 세대주 기간은 주민등록등 · 초본을 기준으로 확인, 청약관련예금 납입인정금액및 회차는 국민주택공급신청서기입 은행에서 발급)를 기준으로 확인함.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측세대 구분없이 일괄 추첨함. • 당첨자는 지정 계약일에 계약하여야 함.

• 신청형별로 공급호수의 20% 범위안에서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여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시 예비순위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함.

• 예비 입주자의 선정은 지역우선, 일반공급 구분없이 당해 신청형별 접수 자 전원을 대상으로 청약 순위에 따른 선정함

• 특별공급 물량에 대하여는 별도 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아니하며 미달 또는 부적격처리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114.105㎡형(해당동 : 706동)은 마이너스옵션선택이 가능하며, 마이너스 옵션의 신청을 원하는 청약자는 청약신청에 유의

■ 공급신청시 구비사항 (청구 청약자에 한함) (건설교통부령 제 477호(2005. 11. 17 공포)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청약시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구분		구비사항
본인 또는 배우자신청시	공통	• 주택공급신청서(1,2순위 : 청약통장가입은행 비치 / 3순위 : 국민은행 비치)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통장(1,2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1,2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 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신청금(3순위 신청자에 한함) ※ 배우 자 대리 신청시 입증서류 추가 제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배우자 관계확인) 기등의해 명시함
제3자 대리신청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주택공급신청위임용 :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양식(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양식은 신청접수장소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접수함.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사류 제출)

※ 2003. 7. 1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신청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 로 인한 질문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질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명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3순위 청약신청금

구분	전주 택형	신청금 납부 방법
청약신청금	500만원	기급적 수도 권지역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3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2008. 4. 14) 이후 평일 09:30 ~ 16:30(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환불장소 : 청약신청한 국민은행 본 · 지점

▶ 제3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 구비사류

① 본인 또는 배우자 환불시 : 주택공급신청접수(영수)증(당첨자는 사본 제출), 본인확인증표(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청시사용한 인장 또는 본인 · 배우자서명 (사항으로 신청한 자가 청약자 환불시에 한함)

② 제3자 대리환불시 : 상기 본인 환불시 구비사류 이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 1통, 청약자의 인감도장, 제3자의 본인확인 증표(주민등록증 등).

※ 청약자 본인의 본인확인증표 제출 생략 가능.

▶ 제3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 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한 국민은행 본 · 지점에서 환불받아 계약 체결하여야 함 [단, 지정계좌(청약자 본인의 국민은행 계좌에 한함)로 이체 신청한 분은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자동이체됨]

■ 입주자선정방법 및 동 · 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19조2, 3항	• 각주택형별 신청자및 입주자입증서에 각 주택형별로 당시 견본주택에서공개추첨에 의해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 추후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로 발생되는 세대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우선공급함 .
	무주택 3자녀	• 특별공급 신청자다수 일 경우 자녀에게 공급주택형별 3% 를 특별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우선순위배점표"에 의한 접수순에 따라 대상자 선정함 . • 각주택형별 신청자및 입주자입증서에 각 주택형별로 당시 견본주택에서 공개추첨에 의해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하고 또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접수순에 따라 선정함 . • 추후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로 발생되는 세대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우선공급함 .
가점제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일반공급대상 주택수의 75%를 가점제 공급신청자에게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공급하며, 가점제 신청자 중낙첨자는 별도의신청없이 해당지역 동일 순위자 등과 함께 전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일반공급		• 국민은행 컴퓨터 추첨에 의해 청약관련예금 가입은행 구분 없이 각 순위별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 각순위별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용인시 1년이상 거주자 신청자중 낙첨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수도권 거주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입주자모집 결과 경쟁이 있는 경우 각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20% 범위내에서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여 미계약세대 또는 계약취소세대 발생시 예비당첨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일에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 • 특별공급 당첨자 중 일반공급에 중복 당첨된 경우에는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 인터넷, 모바일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안내

구분		국민은행 (국민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에 한함)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외의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에 한함)
인터넷	이용방법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분양 관 → 자이 배정자조회 → 당첨 확인 → 주택보조회	금융 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접속 → 인터넷청약 → 당첨 확인
	이용기간	2008. 4. 11. ~ 2008. 4. 20 (당첨일로부터 10일간)	
전화 (ARS)	이용방법	먼저 이용 전화번호 혹은 녹음 안내멘에 따라 청약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연속하여 누름	
	전화번호	전화 1588-9999 (서비스코드:70)	전화 1369 (서비스코드: 5#)
	이용기간	2008. 4. 11. ~ 2008. 4. 20 (당첨일로부터 10일간)	
KB모바일	이용방법	– SKT : MBank 접속 → KB StarNet → 모바일주택청약 → PIN 입력 → 당첨확인 – KTF, LGT KB뱅킹 → 모바일주택청약 → PIN 입력 → 당첨확인	
	이용기간	2008. 4. 11. ~ 2008. 4. 20 (당첨일로부터 10일간)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국민은행에서청약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2008. 4. 11. 09:30 (※ 제공 일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중복 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

- 3개의 특별공급 대상자 : 당첨여부 미확정으로 일반공급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당첨시 3자녀 특별공급 당첨으로 우정
- 기타 특별공급 대상자 (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 1세대 1주택만 계약이 가능하므로 일반 청약과 중복 신청 불가하며, 신청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불가, 청약통장 효력 상실 및 재당첨 제한 적용.
- 일반공급의 경우 : 청약신청은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중복신청 · 당첨시 모두 계약 불가, 청약통장 효력 상실 및 재당첨 제한 적용.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청당 당첨자 : 2008. 4. 16 (수) ~ 2008. 4. 18 (금) 3일간, 09:30 ~ 16:30). • 계약금 납부 및 계약체결 장소 : 당사 견본주택.
-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시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부적격자가 이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후 계약을 체결함.
- 계약체결 이후 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 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사업자 일방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 함.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전여세대에 대하여 분양하기전 용인시청과 협의후 분양토록 한다.
-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시 구비사항

구분		구비사항
공통		• 주택공급신청접수증 및 영수증 (단, 인터넷, ARS, 모바일 청약신청당첨자는 제출 생략) • 계약금(수도권 소재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1장으로 준비하시기바람)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아파트 계약용) 및 인감도장 • 본인확인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가주지, 세대주, 2세대 이상 이부 등)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초본 1통(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추가) – 재외동포 또는 국가유공자 증서 사본 1부(단, 국가유공자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청약인 수립 또는 청약신청통장(부기)등 사본 1부(해당자에한함) – 주택소유현황 신청서(기본주택비치) • 청약가점제 신청자 추가 확인 서류(청약가점제신청자에 한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확인서류(청약통장사본) – 배우자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직계존 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할 경우) – 계약자 및 배우자 직계존속주민등록초본(3년이상 가주 등본상 미확인 시)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특별공급 순위 및 장애인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 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기타 무주택자임을증명하는 서류
	재당첨 금지 등 부적격자	• 재당첨 금지 등의 사유 에 의하여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당첨자에 대한 소명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제3자 대리 계약시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 하며(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아파트계약 위임용)1통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체결 장소 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2005. 7. 1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산정, 배우자판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조건 등

- 계약체결 이후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이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자분은 예금가압 의 지사용이 불가함 .
  ① 1 · 2순위 가점제 당첨자 중 청약신청시 기점점수 가사실과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으로 판명될 경우.
  ② 1순위 추첨제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 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로, 판명될 경우.
  ③ 1순위기점 · 추첨제 당첨자 중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
  ④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 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자 . (2002. 9. 5 이후 청약예금(부금) 가입자에 한함).
  ⑤ 1 · 2 · 3순위 당첨자 중 과거 분양가상 한제적용주택에 기당첨된 자 또는 기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로, 재당첨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⑥ 2002. 9. 5 이후 청약통장 가입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분 .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타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각각 동일한 청약조건에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한함).
- 주민등록 법령 상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 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 주민등록 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함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을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함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귀속됨.
- 당아파트 배치구조 또는 동 · 호수 별 위치 및 인근 아파트 단지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체결하여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면적이 차후 분할로 인하여 소수점 이하 면적이 변동될 수 있음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 금액 없음).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7조를 준용함.

■ 세대주 인정기간 산정에 관한 유의사항

- 세대주 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함.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아니한 기간을 전후하여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이를 세대주 인정기간으로 한다.
-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을 변경 후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으로 한다.
  ①세대주 가 사망한 경우, ②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③세대주의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 주택소유에 대한 유의사항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세대주 · 배우자(주민등록이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 됨 .
- 주택개념등 재분 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 일이등기 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차분일) 기준임 .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용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 내용이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 3항의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하며, 재판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개발구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